

#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035
----------	------

제출년월일 : 2017. 8.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2017. 1. 17. 개정된 「도로법」 및 2016.12.30.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안 제2조 및 안 제4조, 안 제6조제1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의2)

### 나. 도로점용료 감면사유는 「도로법」 제68조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안 제5조)

### 다. 도로를 2개 연도 이상 계속 점용하는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안 제8조)

### 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안 별표 1)

## 개정조례안 : 불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 입법예고 : 2017. 7. 19. ~ 8. 8.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 참고사항

- 방침결정문 : 불임 4

## < 불임 1 >

#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8조”를 “제61조”로, “제28조”를 “제54조”로, “제94조”를 “제7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제42조제3호”를 “제68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제38조의2”를 “제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83조”를 “제9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3조제5항”을 “제71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43조제1항”을 “제73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에 따른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를 “제2조”로 한다.

제8조 중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을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8조”를 “제61조”로,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도로법 시행 규칙」제49조”로 한다.

제9조의2 중 “영 제74조제1항의 별표 5 서식 중 제2호 나목과 다목”을 “영 별표 7 중 제2호 가목과 나목”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과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건설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건설과장 윤 순동
	담당팀장 직위·성명	도로행정팀장 유 용 훈
	담당자 성명·전화	김 도 형 (행정 2436)

**【별표 1】**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용단위	기 간 단위	점 용 료
1.전주, 광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배전용기기함, 부선전화기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栓,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1,250  24,100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멘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지름0.1m 초과 0.2m 이하  지름0.2m 초과 0.4m 이하  지름0.4m 초과 0.6m 이하  지름0.6m 초과 0.8m 이하  지름0.8m 초과 1.0m 이하  지름1.0m 초과 2.0m 이하  지름2.0m 초과 3.0m 이하  지름3.0m 초과	길이 1미터	1년 200 400 850 1,250 1,650 2,050 3,100 5,200 7,250  길이 1미터 300 600 1,250 1,850 2,500 3,100 4,600 7,750 10,85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 다.)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을 제외한다)  돌출간판  시설 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기타  돌출간판  시설 안내 표지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기타의 용도  도로횡단 기타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20,700 9,900 17,250 50 150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20,700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4.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격차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길 축물  진 · 출 입로  기 타	점용면적 1제곱미터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2층인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기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 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기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년	150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밀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 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주택 의료수기함 기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달라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달라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달라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삭제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월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1,950원 → 1,900원)
- 5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 허가전 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 5의3.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양카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의 제1호에는 수도, 하수도, 가스, 송유, 송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중 관시설이 아닌 점용물을 포함한다.
7. 위 표의 제3호에는 같은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위 표 제6호의 “기타”에는 다음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위 표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송전탑”의 점용물

- 나. 위 표 제4호·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 다. 위 표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이외의 점용물
- 라. 위 표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일시 점용한 것” 이외의 점용물
- 마. 위 표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주택” 이외의 점용물
9.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10. 위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 【별표 3】

####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조문	부 과 기 준	과태료 상한금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가) 초과 점용면적 $1m^2$ 이하인 경우 : 5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m^2$ 를 넘는 경우 : 가)의 금액에 초과하는 매 $1m^2$ 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200만원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2호	가) 초과 점용면적 $1m^2$ 이하인 경우 : 10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m^2$ 를 넘는 경우 : 가)의 금액에 초과하는 매 $1m^2$ 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150만원

< 불임 2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안 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 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 (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 한 자에게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 금을 징수한다.</p> <p>제4조(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점용료 반환) 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 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 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 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로점용허 가를 취소한 경우</li><li>2. 법 제8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li></ol> <p>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과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 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 다.</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신 청을 받으면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원 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 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 려야 한다.</p>	<p>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 ----- ----- 제61조 ----- ----- 제54조 ----- ----- ----- 제72조 -----.</p> <p>제4조(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점용료 반환) ① ----- ----- ----- ----- 제68 조제3호 ----- -----. ② ----- ----- ----- ----- 1. -- 제63조 ----- ----- 2. -- 제96조 ----- ----- ③ ----- ----- 제71조제5항 ----- ----- ----- ----- ----- ④ ----- ----- 제73조 ----- ----- -----.</p>

<p>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li> <li>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li> <li>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li> <li>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li> <li>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li> </ol> <p>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li> <li>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li> <li>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li> <li>4.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li> </ol>	<p>제5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에 따른다.</p>
---	---

<p>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41조  <u>제1항</u>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      를 발부하여야 한다.</p>	<p>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제2조 ---      -----.      -----.</p>
<p>②~④(생략)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      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      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      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      로 한다.</p>	<p>②~④(현행과 같음)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      -----      -----      -----      -----전년도에 납      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      가된 -----      -----.</p>
<p>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      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p>	<p>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 제61조 ---      ----- 「도      로법시행규칙」 제49조 -----      -----.</p>
<p>제9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 영 제74  <u>조제1항의 별표5</u> 서식 중 제2호 나목과      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p>	<p>②~④(현행과 같음)      제9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 영 별표      7 중 제2호 가목과 나목 -----      -----      ---.</p>

〔四五〕

「要項」(平成20年7月15日-2011年5月21日)  
도로점용료·상장기준표(제3차 개정)

[尾註 1]

[별지 1] <제정 2007.6.15. ~ 2011.5.21>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卷之三		卷之四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제작자	제작일자	제작장소	제작설명
김재현	2018. 10.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제작자 김재현은 본 작품을 개인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주제는 일상에서 발견한 소소한 감동적인 순간을 담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작품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되었으며, 편집은 편집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민수	2018. 10.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제작자 이민수는 본 작품을 개인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주제는 일상에서 발견한 소소한 감동적인 순간을 담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작품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되었으며, 편집은 편집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민경	2018. 10.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제작자 김민경은 본 작품을 개인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주제는 일상에서 발견한 소소한 감동적인 순간을 담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작품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되었으며, 편집은 편집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민경	2018. 10.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제작자 김민경은 본 작품을 개인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주제는 일상에서 발견한 소소한 감동적인 순간을 담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작품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되었으며, 편집은 편집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별표 2]

## 점용료조정산식

신축점용료의 증가율	남부활점용료
10평센트이상 20평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증가율 - 10/100) × 3/10>]
20평센트이상 50평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3/100+ (증가율 - 20/100) × 1/10>]
50평센트이상 100평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6/100+ (증가율 - 50/100) × 6/100>]
100평센트이상 200평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9/100+ (증가율 - 100/100) × 3/100>]
200평센트이상 500평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 (증가율 - 200/100) × 1/100>]
500평센트이상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5/100+ (증가율 - 500/100) × 5/1000>]

&lt;삭제&gt;

[별표 3]

## 과태료 부과기준(제6조 관련)

위 행 반 위	근 법 문	거 조	부 과 기 준	과 태 려 상 한 금 액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 용한 경우	법 제 101조 제2항 제 1호	가) 초과 점용면적 1m <sup>2</sup> 이하 인 경우 : 5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m <sup>2</sup> 를 넘는 경우 : 가)의 금액 에 초과하는 때 1m <sup>2</sup> 마 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200만원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 건 등을 도 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 101조 제2항 제 2호	가) 초과 점용면적 1m <sup>2</sup> 이하 인 경우 : 10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m <sup>2</sup> 를 넘는 경우 : 가)의 금액 에 초과하는 때 1m <sup>2</sup> 마 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150만원	

[별표 3]

##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위 행 반 위	근 법 문	거 조	부 과 기 준	과 태 려 상 한 금 액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 용한 경우	법 제 117조 제2항 제 1호	가) 초과 점용면적 1m <sup>2</sup> 이하 인 경우 : 5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m <sup>2</sup> 를 넘는 경우 : 가)의 금액 에 초과하는 때 1m <sup>2</sup> 마 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200만원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 건 등을 도 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 117조 제2항 제 2호	가) 초과 점용면적 1m <sup>2</sup> 이하 인 경우 : 10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m <sup>2</sup> 를 넘는 경우 : 가)의 금액 에 초과하는 때 1m <sup>2</sup> 마 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150만원	